

제 호

품질인증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대표자: (생년월일:)
- 소재지:
- 지정일:
- 인증업무 범위:

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